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3. 24 선고 2020가단1316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1. 3. 10.

판결 선고2021. 3. 24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2,559,175원 및 그중 4,995,220원에 대하여 2020. 5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7. 4. 2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,559,1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은 원고에게 12,559,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제2, 3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이순형

별지